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지침

## 제1장 계획수립 개요

###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의 목적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자체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및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 제2절 기본계획 개요

1-2-1 (목적) 농촌의 난개발과 농촌소멸위기에 대응하여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확충, 공동체 육성 등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2 (계획수립권자와 범위)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또는 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관할 구역에 대해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2-3 (성격)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향하는 농촌공간의 모습과 실현 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자 전략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1-2-4 (지위) 정주여건 개선, 산업 육성, 공동체 육성 등 농촌 공간 측면에서 농촌 정책과 과제에 대한 최상위 계획이며, 실행계획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상위 계획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1-2-5 (타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따른 도시·군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등과도 연계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3절 계획수립 대상 및 범위

1-3-1. 계획수립 대상은 읍·면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별표1]의 시·군이다.

## 제4절 목표연도 및 계획구역 설정

### 1-4-1. 목표연도

- (1) 기본계획은 시장·군수가 정하는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한다.
- (2)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이 지난 후에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고, 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1-4-2. 계획구역 설정

- (1) 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농복합시의 동 지역이 교육·복지·의료 서비스 제공, 산업 육성 등에서 배후 농촌지역에 대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인 경우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 (2) 시장·군수는 주민 생활이 주변 시·군의 일정 지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등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변 시·군의 관할구역 일부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인접한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2장 계획수립 내용과 작성 원칙

### 제1절 계획의 내용

2-1-1. 기본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의 내용을 포함하며, 시·군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항목을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1) 지역적 여건 및 특성
- (2) 계획의 방향·목표와 지표 설정
- (3) 인구분석
- (4) 농촌공간구조 설정 및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변경
- (5) 농촌토지이용 현황 및 농촌특화지구 운용 및 관리
- (6) 농촌 주거·정주여건 개선
- (7) 악취, 환경오염물질,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여 주민 건강 또는 농촌의 환경·경관에 피해를 주고 있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이하 “농촌환경관리시설”이라 한다)의 현황과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

- (8)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현황 및 배치
- (9) 농촌생활서비스 제공 및 공동체육성
- (10) 농촌 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
- (11) 농촌 환경·경관의 보존·관리
- (12) 계획의 실행 및 성과 관리

## 제2절 기본계획 수립 원칙

### 2-2-1. 중장기 전략계획

- (1) 기본계획은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기능 재생을 위한 기본 원칙과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10년 단위 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와 지자체, 민간부문의 사업계획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군의 전략계획으로 수립한다.
- (2) 기본계획에서는 농촌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비전, 추진 전략과 과제 중심으로 여건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사업 계획보다는 포괄적 과제로 제시한다.
- (3) 기본계획에서는 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 생활서비스 확충 등 농촌의 기능 재생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정주환경 개선, 가치 있는 농촌 자원보전과 활용, 난개발 문제 대응 등을 위한 토지이용관리 수단인 농촌특화지구 운용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 2-2-2. 농촌의 지역특성 및 차별성 고려

- (1) 농촌의 인구감소, 고령화, 젊은 연령층 부족으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와 마을 공동화 현상과 더불어 농촌마을 내 비거주 시설 혼재 현상, 유산·경관 등 가치 있는 농촌 자원을 훼손하는 난개발 문제 등 농촌의 위기로인으로 작용하는 농촌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2) 귀농귀촌, 생활인구 확대, 농촌을 무대로한 국민의 활동 수요 증가, 저출산 대응, 탄소중립경제 전환 등을 위해 장래 농촌공간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기회요인들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3) 도시와는 차별적인 농촌지역의 공간구조,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물리적 요소와 경제, 사회, 행정·재정 등 비물리적 요소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제를 진단함으로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한다.

### 2-2-3. 농촌다움 보전 및 활용

(1) 농촌이 가진 자연자원, 경관, 전통문화, 농업유산 등 다원적 가치를 유지·보전하고 활용함으로써 어디서나 살기좋은 삶터, 다양한 기회가 있는 활기찬 일터, 국민 모두에게 매력적인 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농촌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한다.

### 2-2-4. 계획의 일관성 및 통일성 유지

(1) 기본계획은 법 제6조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에서 제시하는 농촌공간 미래상, 정책 목표 및 분야별 정책 방향과 정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2) 기본계획은 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을 통해 시·군의 비전 및 목표를 도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분야별 전략 및 계획을 연계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한다.

### 2-2-5. 지역이 보유한 장점과 잠재력을 발전시킬 방안과 현안 문제에 대한 원인진단과 해결방안 중심으로 작성하고,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불필요한 조사·분석은 지양하여 계획의 간결성을 유지한다.

### 2-2-6. 기본계획이 타법 또는 제도 등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지역 주민 등이 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계획 이행단계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한다.

## 제3절 계획 작성 시 유의 사항

### 2-3-1.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2-1-1의 항목에 대한 내용의 누락이 없을 것
- (2)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및 연계성 확보
- (3) 계획의 논리성, 일관성, 합리성, 실현가능성 확보
- (4) 현황자료의 신뢰성 확보
  - ① 자료출처 명시
  - ② 통계자료는 가능한 최신자료를 사용하고 장단기로 구별하여 적절하게 사용

### 2-3-2. 성과물의 작성

(1) 모든 계획서 및 도면 등의 성과물은 일반인이 알기 쉽고, 계획의 이행에 혼란이 없도록 계획의 내용과 사용되는 용어는 명확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의 전달력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서와 자료집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 2-3-3. 기본계획의 정비

(1) 기본계획은 지역의 중장기 농촌발전 전략이고 시행계획의 근거가 되므로, 농촌공간의 급격한 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2) 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 기본계획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 후 보완하여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 제4절 기본계획의 구성 및 수립

2-4-1. 기본계획은 개요, 현황 및 전망, 비전 및 목표 설정,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발전전략, 부문별 계획으로 구성되며, 계획수립 후 공청회, 시도지사의 승인 등을 거쳐 시장·군수가 확정한다.

(1) ‘개요’에서는 계획의 목적, 공간적 범위, 계획의 성격 및 추진체계에 대해 기술한다.

(2) ‘현황 및 전망’에서는 기초조사를 통해 시·군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시·군의 잠재력, 지역자산, 강점과 문제점을 진단·분석하고 장래 농촌의 여건변화를 전망한다.

(3) ‘비전 및 목표 설정’에서는 시·군이 지향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의 도출과 계획 이행점검 및 목표 달성 확인을 위한 성과지표를 선정한다.

(4)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발전전략’에서는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농촌재생활성화지역별 실정에 맞는 발전전략을 제시한다.

(5) ‘부문별계획’에서는 전략을 부문별로 세분화하여 향후 10년간 추진할 수 있는 과제중심의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추진할 추진방안(추진체계 등)을 제시한다.

2-4-2. 수립한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공청회, 기초·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계획을 완성한다.

## 제3장 기초조사 및 실태분석

### 제1절 기본원칙

3-1-1. 시장·군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시·군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장점, 문제점 등 시·군의 특성과 현황을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3-1-2. 시·군의 현황에 대한 조사와 현황 조사에 따른 분석 내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며 분석 후에는 농촌의 여건변화에 대한 전망도 포함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한다.

① 생활서비스 시설 및 서비스 제공 현황(위치, 서비스 수혜 인구 및 지역범위 등)을 조사 분석하고, 사각지대 등 문제점을 분석한다.

② 현재 시점뿐만 아니라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인구구조, 주민 거주 상황, 지역내 산업구조 등의 변화되는 양상을 조사 분석한다. 조사는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연도로 하여 조사하되, 기준연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가장 최신자료를 활용하거나 과거 자료로부터 기준연도 자료를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지역 고유의 유·무형의 자원, 타 지역과의 차이점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시·군의 특성과 장·단점 등을 도출한다.

④ 농촌환경관리시설(개별입지공장, 폐기물 처리시설, 축사, 태양광시설, 기타 농촌의 환경·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시설)은 개수와 위치, 운영현황 등의 정보를 조사한다.

3-1-3. 계획수립을 위하여 인접한 시·군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1-4. 불필요한 항목에 대한 형식적인 자료 조사는 최소화하고,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분석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 제2절 조사내용 및 방법

3-2-1. 시장·군수는 [별표2] '기초조사 세부항목 및 조사내용(예시)'의 조사항목 중 계획과제 도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을 선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되,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별표2]에서 제시하지 않은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3-2-2. 기초조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파악한다.

- (1) 시·군 농촌공간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
- (2) 시·군 인구 현황(인구구조 변화 및 출생·고령화 추이 등)
- (3) 시·군 농촌 경제 및 일자리 현황
- (4) 시·군 농촌 토지이용 현황
- (5) 시·군 농촌 주거·정주여건 현황
- (6) 시·군 농촌 생활서비스 시설 현황
- (7) 시·군 농촌 생활서비스 및 공동체 현황
- (8) 시·군 농촌 환경·경관 보존 및 관리 현황
- (9) 시·군 농촌환경관리시설\* 및 농촌위해시설\*\* 현황

- \* 개별입지공장, 폐기물 처리시설, 축사, 태양광시설 등 농촌의 환경·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시설
- \*\* 농촌환경관리시설 중 시장·군수가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2-3. 조사방법

- (1)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고루 활용하고,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현지답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다.
- (2)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미 조사된 공식적인 자료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조사된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의 자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1년 이내의 자료 수집이 어려운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 (3) 인구추이, 토지이용현황 등과 같이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가능한 최근 자료를 사용하며, 현황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출처를 명시한다.
- (4) 수집된 자료는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면이나 도표의 형태로 변환하거나 대표성 있는 수치를 구하여 정리한다. 필요한 경우, 지리정보체계(GIS)를 통한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고, 수치지도, 항공사진, 인공위성사진 등 최신자료를 충분히 활용한다.

## 제4장 계획수립 방향

### 제1절 비전 및 목표

4-1-1. 시·군 농촌공간의 현 상황과 예상되는 대내외적인 여건변화, 시·군의 정책 방향,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과제를 도출한다.

4-1-2. 농촌은 농촌다운 자연 보유, 보유한 인적자원 역량, 지역공동체 활동 수준, 농촌형 일자리 분포 정도 등에 따라 활력을 찾는 지역과 침체가 심화되는 지역으로의 분화가 가속화될 전망으로, 시·군의 지리적(근교농촌, 일반농촌, 원격농촌) 위치, 보유자원의 정도(인프라, 일자리, 서비스, 농업유산 등)를 고려하여 시·군이 추구하는 농촌공간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 제2절 성과지표 설정

4-2-1. 성과지표는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지표이며 기본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4-2-2. 성과지표는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가급적 결과 중심의 지표를 발굴하여 적용한다. 성과지표의 설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7-3(성과관리 계획)을 참고한다.

(1) 성과지표는 향후 10년 후에 달성하고자 하는 방향과 구체적인 달성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종합성과지표로 구성하고, 도달목표, 조사시기와 주체, 방법 등도 함께 제시한다.

(2) 성과지표의 측정주기를 정하고, 해당 주기에 맞추어 측정 결과치의 출처와 근거가 명확한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4-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통해 농촌다움 회복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거·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확충에 부합하도록 대표성과 측정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제3절 농촌공간구조 설정

#### 4-3-1. 농촌공간구조 진단

(1) 교육·산업·관광·물류 등의 집적지인 거점과 시·군내에 작동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능별 축(교통축, 녹지축, 농업생산축 등)과 권역(생활권, 경제권, 자원권, 서비스 이용권 등)을 제시한다.

(2) 시·군의 경제적 요소(산업구조 및 일자리 포함), 사회적 요소(인적자원, 지역공동체 등), 환경적 요소(자연자원, 경관, 농촌환경관리시설 등) 등과 관련된 공간구조 특성을 진단하고, 토지이용 현황, 농촌지역의 잠재력 및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3) 농촌공간구조 진단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 시·군 농촌공간이 변화될 모습을 전망한다.

#### 4-3-2. 농촌공간구조 재편 방향

(1) 농촌공간구조 진단 결과와 향후 공간구조 변화 예측을 고려하고,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과 전략 추진에 적합한 미래 농촌공간구조를 설정한다. 기존의 점(點)단위 분산 접근을 지양하고, 선(線)과 면(面)단위의 계획적 접근방식을 채택한다.

(2) 시·군이 보유한 자원(자연·경관, 특산품, 인적자원, 지역공동체 등), 경제·산업 현황, 난개발 현황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불균형 문제 등을 파악하고, 농촌공간구조 재편 방향에 반영한다.

(3) 지역의 인구변화에 대응하면서 농촌이 삶의 질 향상, 일자리·경제 활성화, 농촌체류·생활인구를 창출하는 공간으로서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중점 육성해야 할 기능별 축(산업육성축, 녹지 등의 보전축 등), 정주공간, 공공·민간 서비스 이용 거점, 경제활동 중심, 농촌다움의 유지·보전이 필요한 권역 등의 설정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과 연계한다.

(4) 다른 법 또는 계획에 따른 특구·지구, 대규모 공공·민간개발사업 등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농촌공간구조 재편 방향을 제시한다.

### 제4절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발전 전략

#### 4-4-1.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성격

(1)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전략적으로 투입함으로써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하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본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시·군 전체 지역은 복수의 농촌재생활성화지역으로 나누어 구획하며, 객관적인 근거와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단일 읍·면으로 구성된 시·군 등)를 제외하고는 시·군 전체를 단일 농촌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3)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은 자연환경과 경관의 보전, 주민정주 및 농업생산 등 농촌공간 구조의 특징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개발·이용·보전하기 위해 재구조화 및 재생전략을 시행계획으로 구체화·종합화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이다.

#### 4-4-2.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시 고려 사항

(1) (일상생활 연계) 중심지-기초생활거점-배후마을로 이어지는 생활서비스 전달 체계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로 설정한다.

(2) (기능적 연계) 장래에 발생할 인구, 대외적 여건, 산업구조 등의 변화를 복합적으로 고려시, 가급적 동일한 문제와 해결 방법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권역으로 설정하며, 해당 읍·면이 인접한 동지역의 배후마을 성격이 강한 경우 동지역의 생활서비스 등의 연계도 고려한다.

(3) (동질성) 교육·의료·복지·교통서비스 행정관할권이 같고, 역사·문화·경제활동·지역 공동체 활동의 동질성이 큰 권역으로 설정한다.

(4) (분리) 단일 또는 소수 읍·면이 지형, 도로망 등에 의해 공간·기능적으로 분리되거나 도시와 개별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권역으로 설정한다.

(5) (종합적 고려) 지역 내 각급 중심지들의 계층, 기능적 연계성, 배후마을과의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절한 규모로 설정한다. 시·군 내 모든 공간은 어느 하나의 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되도록 설정하며, 가급적 읍·면이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6) (기타) 도시·군계획의 생활권 계획 등을 참고한다. 최상위 계층 중심지(군청이 소재한 읍 지역, 시청이 소재한 동 지역)는 행정·복지 서비스 등이 시·군 전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개 이상의 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 중첩하여 설정할 수 있다.

#### 4-4-3.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발전 전략 제시

(1)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농촌재생활성화 지역별로 개선·발전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농촌재생활성화지역 간 연계성과 기본 계획과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① 해당 시·군이 지향하는 농촌공간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② 농촌재생활성화지역별 여건과 특성, 농촌재생활성화지역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 발굴 및 활용, 문제점 및 개선방향, 생활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2)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중인 각종 계획과의 부합성, 주변 지역 과급효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급성,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 제시된 발전 전략은 시행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지침적 성격을 가진다.

## 제5장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 제1절 기본 고려 사항

5-1-1. 시·군의 비전, 목표,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부문별 계획의 방향을 정하고 실천 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1) 지역 여건 및 계획수립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시·군 계획의 전략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부문과 항목 위주로 수립하며, 형식적이거나 불필요한 사항은 지양하고, 필요한 경우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두 개 이상의 부문별 계획을 통합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부문별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 2-1-1의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대조표를 별도로 제시한다.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정도와 정부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를 활용하여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개선, 농촌 경제활동의 부족한 부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5-1-2. 부문별 계획은 기초조사 및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래 변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시·군의 비전 및 목표에 부합하고, 부문별 계획 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제6장의 농촌특화지구 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5-1-3. 주민 고령화, 귀농·귀촌 및 농촌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생활인구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다양한 공동체 활동 육성, 지역단위의 통합적 농촌재생 지원체계(광역·기초 지원기관, 지원기관 및 행정협의회, 주민협의체 및 중간지원조직 등)의 활성화연계 방안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5-1-4. 각 부문별 정책·사업에 대해 서술할 때에는 단순 나열을 지양하고,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내용 또는 그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서술한다.

5-1-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농식품부)’의 정책 방향과 정합성을 유지 하되 해당 시군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제2절 농촌 주거·정주여건 개선 부문

### 5-2-1. 목적 및 대상

- (1)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의 정주성과 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귀농·귀촌, 생활인구 확대 등 장래 농촌공간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 생활인구 등의 주거·정주 여건 개선도 계획의 대상에 포함한다.

### 5-2-2. 수립 방향

- (1) 시·군 정책 방향, 인구 증감 추이, 주택 분포 현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개별 마을 단위 접근을 지양하고, 전체 생활권 관점에서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2) 농촌 인구 공동화 문제에 대응하여 장래 정주 기능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 가능성이 큰 마을들을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를 강화한다. 인구과소화가 심화되는 마을은 인근 주거·서비스 거점 지역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전·집단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거점 마을과의 연계 개발 등 정비 방향과 계획을 제시한다.
- (3) 청년, 귀농·귀촌인, 외국인 노동자 및 생활인구의 정착·체류를 위해 농촌형 임대 주택 조성, 빈집 활용 등 다양한 주거 공간 조성 방안을 제시한다. 일자리 또는 생활 서비스 시설과의 접근성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한다.
- (4) 신규 주택 입지는 보육, 교육, 문화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읍·면 소재지, 복합서비스시설 인근으로 유도한다.
- (5) 빈집 관련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의 일관성,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등 관련 정책을 고려하여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 및 체계적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 (6) 노후주택 개량,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아파트 중심의 도시 주거와 구별되는 농촌형 주거 문화 확산과 에너지 절감형 주거 모델 적용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7) 계획수립 시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등 시·군 생활기반시설 현황과 중장기 확충 계획 등을 고려한다.

(8) 농촌특화지구 중 농촌마을보호지구를 활용하여 농촌위해시설의 입지를 예방하고, 보건·교육 등 주민생활 필수시설들은 규제 완화 등으로 입지를 유도한다. 농촌마을보호 지구는 향후 정주 기능이 유지되고 인구 유입 잠재력이 큰 지역부터 우선 검토한다.

### 제3절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확충 부문

#### 5-3-1. 목적 및 대상

(1) 보건·복지, 교육, 돌봄, 문화 등 생활 서비스시설\*을 확충하고, 생활권의 중심지-기초생활거점-배후마을로 이어지는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농촌 주민이 불편 없이 생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농촌생활서비스시설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교육·교통·문화·보건의료·보육·복지·상업 및 생활편의·체육·행정안전·휴양시설 및 조례로 정하는 그 밖의 시설

(2) 행정, 보건, 의료, 교육,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되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인프라 조성 사업, 정책 등을 종합 연계하여 생활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5-3-2. 수립 방향

(1) 모든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지원계획을 지양하고, 시·군별로 농촌재생 활성화지역 단위의 거점 역할을 하는 읍·면 중심지를 선별 육성하여 중심거점·기초 생활거점·배후마을을 상호보완적으로 연결하고, 기 조성된 지역은 고도화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역밀착형 생활기반시설(마을카페, 실내체육시설, 공동식당, 빨래방 등)과 행정, 금융(우체국, 농협), 보건 등 생활서비스 시설을 복합·단지화, 초등학교 시설 복합화(돌봄, 문화시설 등 복합화) 등을 통해 주민들이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3) 읍 지역은 기존 시설을 고도화·복합화하여 넓은 권역에 생활서비스를 공급하고, 면 지역은 직접서비스 및 커뮤니티 활동 구심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시·군 내 공간계층과 시설별 서비스 공급범위를 고려한 투자필요 시설의 최적 입지를 제시한다.

(4) 중심지나 기초생활거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주변 마을에 일정한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마을의 경우에는 하위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다.

(5) 시·군의 대중교통체계(노선도, 운행횟수 등) 및 농촌형 교통서비스(공공형 버스·공공형 택시 등) 운행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 및 교통약자 현황을 도출하고 인근 도시, 상위 거점마을과 배후 마을 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연계방안 등을 제시한다.

(6) 농촌생활서비스 제공 부문과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다.

#### 제4절 농촌생활서비스 제공 및 공동체 육성 부문

##### 5-4-1. 목적 및 대상

(1) 저밀도 분산 거주하는 농촌 정주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생활서비스 영역에서 시설 방문을 통한 서비스 전달의 한계를 보완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전달 모델을 발굴·보급함으로써 농촌 주민들의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농촌생활서비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고용·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환경·문화 서비스 및 그 밖의 서비스

(2) 지역사회 구성원 다변화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행정리 단위에 한정되지 않는 다변화된 공동체\* 활동을 육성하고, 특히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마을들을 연계한 확대된 지역공동체 조직 형성 및 참여주체 다변화의 유도를 고려한다.

\* 공동체 : 농촌 주민 등이 결성한 지역 서비스 공동체와 그 외 농업생산활동 영위 등 다양한 목적으로 농촌지역의 지속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주민 공동체 조직

##### 5-4-2. 수립방향

(1)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공급 모델을 발굴·확대(원격진료, 화상교육, 독거노인 음성돌봄 등)하여 먼거리, 낮은 인구밀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2) 미래 농촌공간에서 ICT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생활서비스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리빙랩 등 방안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모델 구현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3) 젊은 연령층과 도시근로자 등이 머무는 농촌을 위해 보육 서비스,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유휴 공간(공공시설, 창고, 빈집 등)을 활용하여 공공 또는 민간이 참여하는 문화·체육·평생교육·농촌형위케이션 시설 등을 조성하여 지역에 없던 서비스를 공급하고 농촌 생활을 위한 관련정보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4)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24.8월 시행)」에 따라 수립하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을 농촌의 주거·고용·교육·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서비스 공동체’로 육성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5) 농촌의 사회서비스 부족을 해결하려고 농촌 주민이 결성한 지역서비스 공동체나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귀농귀촌인, 청년층, 여성 등)이 참여하여 상시적인 돌봄, 주민 복지 등을 제공하는 활동이 가능한 여건의 조성방안을 제시한다.

(6) 마을별 교육·문화·예술 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출신 청년 등을 대상으로 농촌형 지역 활동가를 육성하고, 필요한 교육훈련, 주민역량 강화 방안, 생활인구 활동 지원을 위한 도시와 농촌간 연계 협력사업 방안을 마련한다.

(7)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확충 부문과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다.

## 제5절 농촌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 부문

### 5-5-1. 목적 및 대상

(1) 스마트농업 등 농업의 고도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 이외에도 고유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는 창의적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주민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와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농업 육성, 유·무형 자원(생태·문화·경관)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 활성화와 농촌융복합산업의 고도화 등을 계획의 대상으로 한다.

### 5-5-2. 수립방향

(1)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농업을 농촌에서 체계적으로 정착·육성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① 청년농이 농업에 진입·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시설·자금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안을 제시한다.

② 고령화·인력 부족·생산성 정체 문제 등을 해결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확산 방안을 제시한다. 주변 농작물의 생육이나 영농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물 형태의 수직농장, 대규모 스마트농업 시설 등은 농촌특화지구 중 농촌산업지구 등을 활용하여 적합한 지역에 단지화한다.

(2) 농·특산물에 기반한 가공·제조 사업과 함께 생태·문화·농업·경관 등 지역자원을 접목하여, 관광, 레저 등 경제활동을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① 고용 창출,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창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창업가, 청년사업가, 기업 등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② 청년 등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예비단계, 창업초기단계, 성숙단계 등 단계별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농식품부의 창업지원(농촌융복합산업, 농식품벤처기업 등) 이외에도 중소기업벤처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창업 관련 정책 및 센터를 연계한다.

③ 농촌소멸고위험지역 등의 재생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 등이 스스로 규제 또는 규제 완화를 계획하여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를 활용한다.

\* 자율규제혁신지구는 향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도입할 계획임

(3) 기존 개별업체 단위의 농촌융복합산업을 시·군 단위 등으로 확장하고, 기업·산업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위해 선도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지역 내 농업생산·식품·관광 등을 함께 연계·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4) 주민들이 농촌 지역사회 유지에 필요한 돌봄, 복지, 교육, 문화, 생활서비스, 환경관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인력의 미스매칭 문제를 개선하고, 도시 청년층의 농촌거주·체험을 통한 신규 사업구상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5) 귀농·귀촌 및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도·농간 연계·협력 사업발굴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기존 주민들과 함께 농촌경제 및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6) 집단화·집적화 등을 통해 계획의 목표 달성이 유리한 경우 농촌산업지구,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축산지구를 조성하여 농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을 제시한다.

## 제6절 농촌 환경·경관의 보존 및 관리 부문

### 5-6-1. 목적 및 대상

(1) 농촌다움 창출을 위한 유·무형 자원의 발굴·보전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활동을 포함한 체계적인 보전방안, 공익직불제 등 관련 정책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민과 더불어 귀농·귀촌 등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려는 도시민과 농촌에 정주하지 않더라도 농촌에서 활동하거나 지속적으로 농촌과 교류하는 생활인구가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여 농촌다움을 회복·보전함으로써 농촌을 국민이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쉬고 싶은 곳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5-6-2. 수립방향

(1) 농촌의 특색있는 자연자원, 전통문화, 농업경관, 농업유산 등을 발굴하여 체험관광, 마을생활정비, 사업화 모델 구체화 등 농촌공간에 산재해 있는 유·무형 자원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① 우수 경관 지역의 계획적 보전·개발, 경관 작물 재배, 지역주민 자율 규제를 통한 마을 디자인 등을 통해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하는 등 농촌 경관의 가치를 제고한다.
- ② 농업유산지구 지정, 주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농업유산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③ 쉼터로서의 농촌 공간의 기능을 고려하여, 주민활동에 기반한 지역자원 보전 및 활용방안 등을 고려한다.

(2) 지속 가능한 농촌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주도하여 동·식물, 야생생물 서식에 필요한 비오톱(숲, 가로수 등), 생태자원 보전, 자연형 하천 복원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등 환경관리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한다.

(3) 공익직불제 등과 연계한 지역공동체 단위의 농업환경 보전활동이 확산되도록 지원하며, 친환경적 농업기반 정비와 생활환경 정비 등의 연계방안을 제시한다.

(4) 농촌 특성을 반영한 저탄소 생활 실천 및 환경 친화적 농촌 조성을 위해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농촌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방안 등을 제시한다.

(5) 집단화·집적화 등을 통해 계획 목표 달성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한다. 태양광 시설의 경우, 주변 농업 활동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계통연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지구를 활용하여 집단화를 유도한다.

(6)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시·군·구 환경계획과 「경관법」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경관계획을 수립한 시·군에 한함)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계획한다.

## 제7절 농촌환경관리시설 및 농촌위해시설의 정비·관리 부문

### 5-7-1. 목적 및 대상

- (1) 농촌정주여건, 경관 및 환경의 개선 및 관리를 위해 농촌환경관리시설과 농촌위해시설에 관련된 정보(분포, 피해발생현황 등)를 수집·축적하고, 필요시 정비·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농촌환경관리시설 및 농촌위해시설의 정비·관리는 현황 조사, 주민의견 수렴, 계획 수립, 시설개선 지원, 시설의 이전 및 집단화 지원 등 전 과정을 포함한다.

### 5-7-2. 수립방향

- (1) 마을이나 그 주변에 위치한 농촌위해시설 등을 이전·집단화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전시설에 대한 재정적 보상계획과 이전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한 구체적 조성방안을 마련한다.
- (2) (1)의 경우, 농촌마을보호지구를 지정하여 주민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의 신규 진입을 예방하고, 이전 대상지에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을 지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 (3) 농촌위해시설의 이전·집단화를 위해 국비를 활용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총사업비(매칭지방비 포함) 이외에 지방비(매칭지방비 제외)를 추가로 확보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4)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등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산업 기반조성, 친환경·스마트 축산 육성 지원, 에너지시설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해당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동시에 제시한다.
- (5) 시·군의 농촌공간 토지이용 실태와 도시·군 관리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고, 정비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타당성 있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법에 정한 절차나 방법,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제6장 농촌특화지구 운용 및 관리

### 제1절 농촌특화지구의 개념 및 성격

6-1-1 (개념) 농촌공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획하여 현행 획일적인 용도지역을 보완하고, 유사한 기능의 시설들을 배치하여 주거·정주 여건 보호, 산업집적, 농촌다움 보전 및 활용을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다.

6-1-2 (성격)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고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시키기 위해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구로 다음의 성격을 가진다.

(1) (자율적 지정)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농촌특화지구는 고유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농촌공간재생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사업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농촌공간 재구조화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주민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역의 자율로 지정하는 지구이다.

(2) (연계 지정 고려) 농촌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토지이용을 개선함으로써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시키기 위해 「국토계획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와 연계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지구별 특성) 농촌공간의 다양한 개별입지적 토지이용을 유사한 목적의 이용용도로 유형화, 집적화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특화지구별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①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마을의 생활환경과 농촌다운 정주 여건을 살리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쾌적한 마을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마을 입지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지구이다.

②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는 관련된 토지이용을 재배치·집적화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구이다.

③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는 농촌의 특징적인 경관, 생태자원, 전통적 농업자원 등 농촌다운 토지이용 특성을 보전, 육성, 관리하기 위한 지구이다.

(4) (규제완화 및 지원) 농촌특화지구에서 주거·생활·산업 등의 기능적 분리를 통한 토지이용 관리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 생활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설들의 입지를 유도하기 위한 지구이다.

## 제2절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 방향

6-2-1. 농촌특화지구는 농촌 토지이용의 기능(주거, 산업, 축산 등)을 고려한 이격·구획 및 연계, 농촌위해시설의 이전·재배치 및 집단화로 현재의 개별적 토지이용, 개발행위, 시설입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6-2-2. 기본계획에서는 시·군의 전체적인 중장기 목표와 추진전략을 토대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관리할 지역의 후보군을 검토하고, 시행계획에서는 구체적인 지구의 지정 목적, 규모 및 경계 등을 계획하고, 이와 함께 지정 목적에 맞는 사업 연계 등의 실행방안을 정하여 관리한다.

6-2-3. 시·군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와 농촌재생활성화지역별 발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중장기 방향과 계획을 제시하고, 소규모 지구들이 난립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1) 농촌마을보호지구는 향후 10년의 중심지 위상, 인구추이, 잠재력, 토지이용 수요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장, 유지, 보전, 회복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주민요구, 마을 정주환경 보전활동 등을 포함하여 전략을 제시한다.

(2)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가능지역에 대해 향후 여건변화에 따른 개발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 가능 지역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전략을 제시한다.

6-2-4. 농촌특화지구는 토지이용 간 조화로운 공간적 관계를 정하여 농촌다움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 5장의 부문별 계획과 연계하여 공간단위로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1)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는 생활 및 생산관련 토지이용의 공간적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기능적 분리 및 재배치, 농촌 토지이용의 효율성, 다양한 농촌특화지구 간 상호조화와 연계를 고려한다.

(2)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으나, 농촌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공장, 농촌위해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축산지구, 재생에너지지구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지정한다.

(3) 농촌특화지구는 5장의 부문별 계획 중 주거·정주여건 개선, 농촌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 생활서비스시설 확충·제공, 농촌환경관리시설 정비 부문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

(4)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유관사업의 사업구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6-2-5. 농촌특화지구 조성으로 마을이나 그 주변에 위치한 농촌위해시설을 이전·집단화 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전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이전 부지 확보계획 등을 포함하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

(1) 농촌특화지구 지정으로 특정건축물의 입지제한이 발생할 경우,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지정 효력이 발생하기 전부터 있었던 기존 시설에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2) 농촌환경관리시설의 이전·집단화를 위해 국비를 활용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총사업비(매칭지방비 포함) 이외에 지방비(매칭지방비 제외)를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3절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 6-3-1. 주요 고려 사항

(1) (도시·군 계획 연계) 도시·군관리계획에서의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정비 또는 보전 방향과 조화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2) (절차의 투명성) 명확한 지정요건을 갖춰야 하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기능적 연계) 다른 법의 지역·지구 등과 토지이용 관리 목적이 상충되지 않고,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될 경우 상호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사전 협의) 농촌특화지구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시부터 관련 법에 정한 행정절차,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기관(부서)과 사전에 협의하여 설정한다.

#### 6-3-2.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1) 시장·군수는 시·군의 농촌공간구조 재편 방향에 따라 이전·철거·집단화, 정비 또는 유지·보전이 필요한 공간관리 대상을 정하고 관련 법과 계획,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략적인 위치와 후보군을 정하여 제시한다. 다만, 후보군 공개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거나 부동산 가격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큰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1)에 따라 후보군을 정할 때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필요성, 지역 여건, 시군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객관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정한다. 다만, 객관적인 방법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3] 을 참고하여 시·군의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농촌특화지구 지정 후보군에 대해 다양한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지정 필요성, 시급성, 지정 가능성, 현행 용도지역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토지이용의 부조화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다.

(4) 주민협정 등을 통해 주민들이 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검토 결과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4절 농촌특화지구 종류별 지정 기준

##### 6-4-1. 농촌마을보호지구

(1)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생활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중심지 또는 거점 마을(기초거점, 하위거점 마을 등)이나 장래에 정주공간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을, 주민들이 주민협정을 체결하는 등 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마을을 우선 검토한다.

(2)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완충지역을 포함하여 지정한다.

- ①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으로 농촌위해시설, 난개발 시설의 입지를 예방하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보건교육 등) 및 도농교류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구 유입 등으로 장래 정주 기능을 유지하여 농촌공간 재생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마을
- ②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적, 문화적, 경관적 특성을 지닌 농촌마을의 가치와 자산의 보호, 회복을 위해 토지이용 관리가 필요한 지역
- ③ 기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장·군수가 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① 「국토계획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일 것
- ② 집단화된 주거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일 것

③ 농촌마을보호지구의 경계는 도로·지형·지물(地物)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가급적 마을이 분할되지 않도록 하고, 미래 신규 주거지 수요와 농촌위해시설의 근거리 입지 제한 등을 고려하여 마을의 가장 외곽에 있는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완충영역을 포함하여 설정할 것

#### 6-4-2. 농촌산업지구

(1) 농촌산업지구는 농촌마을 주변에 개별 입지하고 있는 공장, 창고, 제조업소, 농업용·임업용 시설 등 산업시설을 이전·집적화하여 농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산업 육성 및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정한다.

(2) 농작물 재배를 위한 시설농업(스마트농업시설, 수직농장 등)의 집단화로 주변 지역 활성화 효과가 예상되는 지역, 농촌산업 육성 및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의 기반 마련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한다.

(3)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농림지역에 농촌산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임업용 시설에 한정한다.

-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너목에 해당하는 제조업소 등, 동 시행령 제17호에 따른 공장
-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류시설
- ③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 ④ 그 밖에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시설

(4) 농촌산업지구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① 「국토계획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일 것. 다만, 녹지지역의 경우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용 시설을 집적화하는 경우로 한정
- ② 농촌마을 주변에 개별 입지하고 있는 공장, 창고, 제조업소, 농업용 시설 등 소규모 시설의 이전(移轉) 및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일 것
- ③ 농지·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에 형성된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일 것
- ④ 농촌산업지구는 30,000㎡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

### 6-4-3. 축산지구

(1) 축산지구는 가축사육 시설,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이 집단화되어 있거나 집단화함으로써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할 수 있다.

(2)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에 따른 동물 관련시설
-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의 자원화·처리·관리 등 시설
- ③ 그 밖에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시설

(3) 축산지구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① 「국토계획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일 것
- ②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축산물 가공시설 및 자원화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원화시설을 말한다) 등 축산업 관련 시설을 집적하여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일 것. 다만, 가축 사육시설 및 축산물 가공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에 기존의 시설을 친환경 또는 현대적 시설로 개수·보수하거나 분뇨처리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축산지구로 우선적으로 지정
- ③ 농지·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에 형성된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일 것
- ④ 축산지구는 30,000㎡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

### 6-4-4. 농촌융복합산업지구

(1)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농촌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농업 생산·제조·가공시설 및 체험시설 등 농촌융복합시설을 집약적으로 조성하여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관광 확대 등을 위해 지정할 수 있다.

(2)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농업생산, 제조·가공·유통·관광 등의 시설
- ② 그 밖에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시설

(3)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① 「국토계획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일 것

- ②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생산, 제조·가공 및 유통·관광 등의 시설 집적화가 가능한 지역일 것
- ③ 제조·가공 공장 또는 농촌위해시설을 포함시에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둘 것
- ④ 농지·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에 형성된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일 것
- ⑤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30,000㎡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

#### 6-4-5. 재생에너지지구

(1) 재생에너지지구는 농촌마을과 산지 인근에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이 소규모, 산발적으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집적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효율적으로 조성하는 한편, 주거 여건, 영농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할 수 있다.

(2)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 ② 재생에너지를 생산, 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 ③ 그 밖에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시설

(3) 재생에너지지구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① 「국토계획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일 것
- ②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환경친화적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지역일 것
- ③ 농지·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에 형성된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일 것
- ④ 재생에너지지구는 50,000㎡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

#### 6-4-6. 경관농업지구

(1) 경관농업지구는 농촌의 농업생태, 지형, 경관, 환경적 특성 보전을 통한 농촌다움 가치 증진과 일상적 농촌경관 회복 등 농업·농촌 경관의 자원화를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경관농업지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경관 보전직접지불의 대상지역에서 정하는 동종·유사 작물의 범위 등 지정범위, 지정규모,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준하는 곳

② 마을 주변의 구릉, 수계 등을 포함한 농지로 지자체 또는 주민이 동종·유사작물 집단화에 따른 우수경관으로 관리·개선하고자 하는 곳

③ 주거지, 농지, 하천 등의 환경을 관리하여 농촌마을과 농업경관을 연계하고 농촌다움을 향상시키고 가치를 증진하여 자원화할 수 있는 곳

(3) 경관농업지구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국토계획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일 것

② 경관작물(「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관작물을 말한다)을 집단화하여 재배하는 농경지 및 그 주변 지역으로서 우수경관의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일 것. 이 경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농지를 우선적으로 지정

#### 6-4-7. 농업유산지구

(1) 농업유산지구는 국가 및 지역적 차원에서 농업·생태·지식·문화·경관적 보전가치가 큰 농업유산의 집중적인 관리를 통한 농촌다움의 가치 증진을 위해 지정할 수 있다.

(2) 농업유산지구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국토계획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일 것

②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 또는 그 밖에 농업적·생태적·지식적·문화적·경관적 보전 가치가 있어 종합적인 토지이용 관리가 필요한 지역일 것

③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핵심자원이 분포한 지역 또는 농업유산의 보전관리와 원활한 활용이 가능한 범위의 지역일 것

④ 주거지, 농지, 하천 등의 환경을 관리하여 농촌마을과 농업유산을 연계하고 농촌다움을 향상시키고 가치를 증진하여 자원화할 수 있는 곳

## 제7장 계획의 실행 및 성과관리

### 제1절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

#### 7-1-1. 농촌공간정책심의회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농식품부장관”이라 한다)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등 농촌공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심의기관으로 중앙 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두며,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가 대신 한다.

(2)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과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를 각각 설치한다.

① 시·도지사는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광역정책심의회”)를 두고, 시장·군수는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기초정책심의회”)를 설치한다.

②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이 광역정책심의회 및 기초정책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1.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2. 농업과 농촌에 관하여 심의하는 기능 보유,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위원에 포함

(3) 광역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지역의 주요 시책,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4) 기초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사업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지역의 주요 시책,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7-1-2.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1) (역할) 시·도지사는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이하 “광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시장·군수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하 “기초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농촌공간계획의 수립과 이행지원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① (광역지원기관 업무) 시·군의 계획수립 방향 조정, 광역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 관리, 시도 현황 및 주요 지표 조사·관리 지원, 기초지원기관 관리 및 지원, 지역협의체 구축·운영 지원,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기초지원기관 업무) 기초지원기관은 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 조사·관리 지원, 농촌공간 정책 관련 조사·연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 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주민협정 체결 및 주민협의회 구성 지원, 주민 제안 지원 업무,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구성)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은 해당 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분야 전문인력 3명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가급적 현장활동가 중심으로 구성한다.

① 지역 또는 농촌의 정책·사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지원기관, 센터 등이 운영 중이거나 설치가 예정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하며, 통합이 어려운 경우 기능적 연계 강화 방안을 강구한다.

② 다른 기관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방식과 절차, 시기 등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

(3) (운영)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은 시·도(광역지원기관에 해당)와 시·군 관할 구역 내의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직이 직접 운영하더라도 민관협치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① 광역지원기관과 기초지원기관은 공공성,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 농촌공간계획의 수립과 이행지원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광역지원기관 및 기초지원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지원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원할 수 있다.

### 7-1-3. 행정전담조직(지원조직) 및 행정협의회

(1) 시장·군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지원조직 설치와 시·군 내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부서 간 협의기구인 행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원조직은 최소 팀(계)조직 이상의 전담부서로 운영하며 법 제34조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임기제 공무원 또는 공무원(무기계약직, 기간제)의 경우에도 농촌지역개발 관련 민간 전문가 또는 활동가로 채용되어 농촌협약 등 업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전담 조직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지원조직은 행정협의회의 간사 역할로서 관련 업무 간 조정과 소통, 협조 등을 담당한다.

#### 7-1-4. 주민협의체 및 지역전문가의 활용

(1)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이 시행계획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주민협의체와 같은 자율적 주민대표기구의 구성계획을 제시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다른 계획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기구와의 연계·통합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농업·농촌 사업추진을 위해 육성한 중간지원조직 등과 지역전문가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지역리더를 적극 육성한다.

### 제2절 재정 및 투자계획

7-2-1. 달성 시 필요한 예산 규모를 추계하여 부문별 투자계획, 자원별·단계별 투자 계획을 개략적으로 수립하고, 예산 확보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7-2-2. 시장·군수는 시·군의 재정상황 및 추이를 파악하여 투자계획이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마련되었는지 확인한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연도별 예·결산 현황, 중기 지방재정계획(회계별, 연도별, 분야별 등)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3절 성과관리 계획

7-3-1.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비전과 목표에 대한 성과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종합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점검·모니터링·평가하는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한다.

7-3-2. 종합성과지표는 발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결과(outcome) 중심의 지표와 목표치를 제시하고, 공통지표는 모든 시·군이 성과지표로 반영하며, 자율지표는 시·군이 선택하여 반영한다.

구분	공통지표	자율지표
어디서나 살기좋은 삶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 개수</li> <li>• 생활서비스 시설 이용자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협정 체결 건수</li> <li>• 대중교통취약지역(행정리) 비율</li> <li>• 평균 귀농·귀촌 인구수</li> <li>• 청년 귀농·귀촌 인구수</li> <li>• 지역서비스공동체 수</li> <li>• 농촌공간정비 개소수</li> <li>• 「농어업인삶의질법」에 따른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주민만족도 등 변화율</li> <li>• 「농어업인삶의질법」에 따른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항목별 목표치 달성률</li> </ul>
다양한 기회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지역 창업 건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개수</li> </ul>

구분	공통지표	자율지표
있는 활기찬 일터	• 농촌지역 청년 취·창업 건수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수 • 경제다각화 농가 수(농업 + 농외소득) •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국민모두에게 매력적인 쉼터	•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 * 관광농원, 농촌관광휴양단지 포함 가능	• 경관농업·농업유산 지구 지정 개수 • 생활인구수 • 도농교류 활동 조직 수 • 농촌체험·관광농원 등 농촌 관광 경영체 수

7-3-3. 추진상황 점검체계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성과지표의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 제8장 계획수립 절차 및 기타

### 제1절 기본계획 수립

8-1-1. 시장·군수는 행정전담조직인 지원조직과 기획·예산·집행 및 관리 부서 간의 긴밀한 협의를 위해 설치한 행정협의체를 통해 이행 가능하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8-1-2. 시장·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설명회, 간담회, 설문조사, 시·군 게시판 및 인터넷 홍보 등을 통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8-1-3. 각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는 개별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들과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제2절 주민참여 제고

8-2-1. 시장·군수는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에 대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 과정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8-2-2. 시장·군수는 주민들에게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을 공유하고,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에 대한 이해, 주민의 자율적인 규제와 협정 등에 대한 교육·설명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제3절 의견 청취

8-3-1. 시장·군수와 승인권자인 시·도지사는 계획수립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주민상호간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갈등의 조정과 해소에 필요한 협의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8-3-2. 시장·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법에 따라 지방의회, 관계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4절 공청회

8-4-1. 시장·군수는 수립한 기본계획(안)에 대해 농촌공간계획 분야 전문가와 주민 대표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8-4-2. 시장·군수는 공청회 개최 시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1) 공청회 개최 목적
- (2) 공청회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 (3) 계획(안)의 내용
- (4) 그 밖에 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4-3.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은 계획(안)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에 참석하여 시장·군수에게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8-4-4. 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계획(안)에 반영하고,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안)의 승인신청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미조치 사유 등 의견청취 결과 요지를 첨부한다.

#### 제5절 기본계획 승인

8-5-1. 시장·군수(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기본계획 수립·변경 승인신청 공문
- (2) 공간구조, 토지이용체계,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
- (3)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4)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5) 기본계획(안)

(6) 그 밖에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8-5-2.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신청한 기본계획(안)의 수립·변경에 대해 농식품부장관과 협의하고,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승인한다.

8-5-3.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조정·보완하여 승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 6절 기본계획 확정 등

8-6-1. 시장·군수(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는 시·도지사가 승인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6-2. 시장·군수는 승인된 기본계획 골격을 토대로 기본계획서를 보완한 후 시·도지사의 사전검토를 거쳐 최종 기본계획서를 색도 인쇄하고, 최종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유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8-6-3. 기본계획서에는 시행계획 수립 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작성기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최초 구상부터 최종 기본계획서 작성시까지의 연혁

(2) (수록대상) 작성기간 중에 있었던 최초구상, 용역의 발주 및 집행 관계기관과의 협의, 각종 위원회 등 회의, 공청회 또는 주민 의견청취(열람), 관계법규 또는 지침, 질의회신 등 당해 시·군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되는 사항

(3) (수록내용) 일시, 장소, 관계기관 및 참석자명, 주된 회의내용, 주민의견 및 각종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미조치 사유 포함), 질의회신(발취) 등

[별표1] 계획수립 대상 시·군

구 분	시 · 군
경기(15)	평택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포천시
강원(15)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충북(11)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15)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13)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21)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22)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울릉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경남(18)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합천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세종(1)	세종시
제주(2)	제주시, 서귀포시
부산(1)	기장군
대구(2)	달성군, 군위군
울산(1)	울주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별표2] 기초조사 세부항목 및 조사내용(예시)

※ 아래 제시하는 조사 항목은 활용 가능한 정보에 대한 예시로, 계획수립 시 시·군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불필요한 조사·분석은 지양한다.

대분류	소분류	조사항목	출처
지역 여건 및 특성	시·군의 역사	지역의 연혁	시군 기본계획
		행정구역 변천 현황	시군 기본계획
	행정	선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학구역	학구도안내서비스
	역사문화자원	문화재지정현황	문화재청, 지자체
		문화재 분포	지자체
		역사자원 현황	지자체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상위계획	지자체
		관련계획	지자체
	대내 외적 여건변화	거시적 여건변화	국가, 시·도 상위계획
		지역적 여건변화	지자체
		인접지역 여건변화	지자체
	재정	재정자립도 추이	지자체
		지방세수입 (재산세, 기타 지방세)	지자체
		지방채 발행	지자체
		교부금	지자체
	입지여건	위치	국토지리정보원
		면적	국토지리정보원, 통계연보
		행정구역	국토지리정보원, 통계연보
		접근성 및 교통체계	국토지리정보원
		지형지세(표고·경사도)	국토지리정보원
		수계하천(수계·하천)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해안간석지(해안선, 도서, 간척지구)	해양환경정보포털, 시·도 지자체 홈페이지, 간척지 관리처분 현황
		산림현황 (산림면적, 산악수계생태도, 임상도 등)	통계연보, 지자체, 산림공간정보서비스
		자연재해 (수해, 냉매, 가뭄, 풍해, 지진 등)	국민재난안전포털, 지자체
		지형지세	표고
	경사도		국토지리정보원
	수계하천	수계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하천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해안간석지	해안선	해양환경정보포털	
	도서	시·도, 지자체 홈페이지	
	간척지구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 관리처분 현황	
산림현황	산림면적	통계연보, 지자체	
	산악수계생태도	산림공간정보서비스	
	임상도	산림공간정보서비스	
자연재해	자연재해 현황 (수해, 냉매, 가뭄, 풍해, 지진 등)	국민재난안전포털, 지자체	

대분류	소분류	조사항목	출처
인구	총인구	총인구 및 세대 현황·추이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태(출생·사망)현황	국가통계포털
		외국인 인구 현황 및 추이	국가통계포털
		시·군 장래인구 추정 인구밀도분포 지방소멸위험지수	시·도 관련자료, 지자체 지자체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
	인구구조	연령별 인구구조 현황 및 추이	국가통계포털
		생산가능인구 현황 및 추이	국가통계포털
		1인가구 비율 추이	국가통계포털
		행정리별 인구현황	지자체
		고령인구 현황 (고령화및노령화지수)	국가통계포털
		귀농귀촌인구 현황 및 추이 연령별 귀농귀촌인구 구조	국가통계포털, 통계연보 지자체
	취약 및 장려계층	청년인구 비율	국가통계포털, 통계연보
		독거노인 인구	지자체
		장기요양보험 인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초생활수급자 수 인구	지자체
		장애인현황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한부모가정 현황	통계연보
다문화가구 현황		국가통계포털, 통계연보	
농촌경제 및 일자리	지역내 총생산	지역내 총생산(GRDP) 현황 및 추이	국가통계포털, 시·도 통계플랫폼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 현황	국가통계포털
	산업구조 및 특화도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및 추이	통계연보
		산업특화도 및 추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현황 및 추이	통계연보
		고용률 추이	국가통계포털
		주요산업현황	통계연보
		특화사업	지자체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현황	한국산업단지공단, 통계연보, 지자체
		외국인 근로자 현황	지자체
	산업구조	6차산업 인증 사업자 주요산업현황	6차산업지원센터 통계연보
		특화사업	지자체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현황	한국산업단지공단, 통계연보, 지자체
	농업	농가 및 농가인구 현황 및 추이	국가통계포털
		작물 종류, 면적 및 생산량	통계연보
		경지면적 변화	국가통계포털
		주요 특산물 및 재배지	지자체
	축산업	산지유통관리시설(APC)	공공데이터포털
		가축 사육농장 위치	통계연보, 지자체
		가축 사육현황 (종류, 두수) 운영형태 (영업, 휴업, 폐업)	통계연보, 지자체 통계연보, 지자체
어업	어가 및 어가인구 현황, 추이	통계연보	
	수산물 생산량 (어선어업, 양식어업, 마을어업 등)	통계연보	

대분류	소분류	조사항목	출처
	농촌관광	축제 및 행사	지자체
		체험마을 및 체험시설 현황	웰촌, 지자체
	체험	체험마을	웰촌
		체험시설 현황	지자체
	관광행태	관광지 현황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관광지 방문객 현황 및 추이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관광지 방문객 체류시간	한국관광데이터랩
관광 사업체 현황 및 추이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농촌 토지이용	생태자연	생태자연도	브이월드(디지털 트윈국토)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적 민감지역	국토환경정보센터
		보호지역	지자체
		토지피복도	환경공간정보서비스
	주거	주택	건축물대장
	지목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및 추이	통계연보
	용도	용도지역 현황 및 추이	국토지리정보원, 통계연보
		용도지구 현황	통계연보, 지자체
	보전자원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지자체
		공적규제지역	브이월드(디지털 트윈국토)
		농업진흥지역	국가공간정보포털
	개발가능지	보전산지	산지정보시스템, 지자체
		개발가능지 현황	지자체
	공시지가	공시지가	국가공간정보포털
		지가지수 변화	국가공간정보포털
	농지	유희농지	지자체
		경지정리 농지	팜맵
	주요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건수	지자체
		주요 지역개발사업	지자체
토지이용	토지이용 압축도 현황	국토지리정보원	
	토지피복도 변화	국토지리정보원	
토지불부합 규모	지목·용도상 건축행위 및 용도규제대상의전용	국토지리정보원	
	인허가	농지전용허가	지자체
산지전용허가		지자체	
건축허가		건축데이터민간개방시스템	
농촌 주거 및 정주여건	주택	주택 보급 현황 및 추이	통계연보
		주택유형 현황	통계연보
		노후주택 현황	국가공간정보포털
		빈집 현황 및 추이	통계연보, 지자체
		주거밀집지역 분포 현황	국가공간정보포털
	생활기반시설	전기공급 현황(신재생에너지 포함)	통계연보, 지자체
		도시가스 공급현황	통계연보, 한국도시가스협회
	상수도 공급현황	통계연보,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현황	지자체	
	농촌생활 서비스	보육시설	국토지리정보원
복지시설		국토지리정보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보건·의료시설		국토지리정보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발시스템	
교육시설		국토지리정보원	
문화시설		국토지리정보원	

대분류	소분류	조사항목	출처
		체육시설	국토지리정보원
		상업 및 생활편의시설	국토지리정보원
		행정안전시설	국토지리정보원
		교통시설	국토지리정보원
		휴양시설	국토지리정보원
	생활서비스 시설	농촌생활서비스시설 세부현황	지자체
		시설 밀집도	지자체
	도로 및 교통	도로·교통망 현황(철도, 공항 등)	국토지리정보원
		교통량 현황	국가통계포털
		대중교통 현황(노선도 등)	지자체
		대중교통 취약인구	산림빅데이터거래소, 지자체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택시, 공공형버스 운영현황)	지자체
	계층구조	운수업체 현황	지자체
		입지계수	지자체
	활용가능시설	중심지 계층	지자체
		활용가능 시설	지자체
	농촌 생활서비스 접근성	활용가능 유희부지(국공유지 등)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자체
		서비스시설 접근성	지자체
	농촌 생활서비스 이용현황 및 개선수요	농촌생활서비스 접근성 취약인구	지자체
		농촌생활서비스 이용현황	지자체
		연계구조(관내이동패턴, 관외이동패턴)	지자체
		통학구역	학구도안내서비스
	농촌공동체	농촌생활서비스 개선분야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현황	지자체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 시·도 중간지원조직홈페이지, 지자체
		현장활동가 및 전문가 현황	지자체
		생활서비스 공급전달 주체 (주민조직, 주민공동체등)	지자체
농촌환경 및 경관보존	환경기초시설	농업인조직 현황	지자체
		하수도 공급	통계연보,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
		하수처리시설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
		폐기물 처리시설	통계연보,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폐기물 발생량	통계연보,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폐기물 재활용률	통계연보,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영농폐기물 발생량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지자체
		마을 재활용시설	지자체
		생활폐기물매립지	통계연보,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계연보, 지자체	
	광역처리시설	통계연보, 지자체	
	분뇨처리시설	통계연보, 지자체	
	환경관리활동	친환경농업	농사로, 지자체
농업환경보전활동		지자체	
대기오염	대기오염 (지역별, 대기오염, 물질별, 오염정도,오염원)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주요경관거점	주요경관거점 (농업경관,산림경관,수경관)	지자체	
	주요경관사업지	지자체	

대분류	소분류	조사항목	출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지역농업유산 지정	농사로, 월촌 지자체
농촌환경 관리시설	농촌 위해요소	입지규제사항	지자체 조례, 환경부 가이드라인 등
		악취·환경오염물질·소음·진동 시설 분포 및 현황 관련민원 현황	국가공간정보포털, 지자체
		(악취·환경오염물질·소음·진동 시설, 경관저해 등)	지자체

### [별표3] 농촌특화지구 종류별 지정 가능지역 검토

#### 1. 농촌마을보호지구

◇ 시·군의 농촌지역을 격자(100×100m~500×500m)로 나누어, 시·군의 특성에 맞는 선정 기준값(생산가능인구비율 변화율, 농촌환경관리시설 개수 분포값, 공시지가 변화율, 주택호수)을 격자에 표시 후 모두 해당되는 지역을 최종 후보군(지정가능지역)으로 도출

(1) 시·군의 농촌지역에 대해 격자정보(100×100m~500×500m)를 구축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시·군 전체에 대한 격자정보를 구축하여 활용해도 된다.

(2) 시·군의 농촌지역을 대상(시·군 전체도 무관)으로 선정기준(생산가능인구비율 변화율, 농촌환경관리시설 개수 분포, 공시지가 변화율, 주택호수)별 평균값, 중위값, 최대값, 최소값, 25%값, 50%값, 75%값, 개수 등을 도출한 후 읍·면 간 편차와 격자별 특성을 파악한다.

(3) 시·군의 특성에 맞게 후보군 도출에 적합한 기준(예: 생산가능인구비율 변화율 중위값, 농촌환경관리시설 개수 75%값 이상, 공시지가 변화율 중위값 이상, 주택호수 등)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선정기준을 추가(예: 고령화율 등)할 수 있다.

##### < 선정기준 >

- ① 생산가능인구비율변화율 : 최근 일정기간(예: 최근 10년) 생산가능인구 비율의 변화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격자  
\* 생산가능인구(15세 ~ 64세)÷시·군 전체 또는 읍·면 인구(최근 10년)  
※ 생산가능인구만으로 정보의 왜곡이 심한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전체 인구수, 고령화율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거나 인구비율변화율 등으로 선정기준 대체 가능
- ② 농촌환경관리시설 개수 분포값 : 시·군에서 포함하고자 하는 시설 전체의 개수를 파악한 후 100개 구간으로 배분(관리시설 1개~전체 개수까지) 후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정분포값(예: 평균값, 중위값, 75%값)을 선정기준으로 정하고, 선정기준 이상인 격자를 모두 추출한 것으로 농촌환경관리시설이 많이 분포하는 격자
- ③ 공시지가 변화율 : 최근 10년간 공시지가 변화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지역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격자, 필요한 경우 기타 토지이용 변화율 지표(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건수 등)를 추가분석 가능  
※ 시군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의 토지이용 분석결과를 활용 가능
- ④ 주택호수 : 농촌마을이 지속적으로 유지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마을의 최소 주택호수(예: 30호이상)
- ⑤ 추가기준: 지역의 여건에 따라 고령화율,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 빈집, 건축물 노후도 등

(4) 4개의 선정기준(①+②+③+④)이 겹치는 격자를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 가능지역으로 도출, 필요시 ⑤와 같은 추가기준을 검토하여, 적절한 수준의 후보군을 도출한다. 단,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5)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 가능지역은 인구, 농촌환경관리시설, 토지이용 등을 고려하여 정주여건 보호를 위해 토지이용 재배치와 관리가 시급한 농촌마을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6) 농촌마을보호지구의 규모를 설정할 때에는 주변 여건,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하는 격자는 연계하여 지구의 규모를 설정한다.

## 2.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 지정가능 후보군 도출을 위해 입지적정성\*을 검토하여 보호요소(주거지, 도로, 하천, 농지)로부터의 이격거리에 대해 등급화한 후 등급별로 입지가능 여부를 결정, 후보지 도출

\* 입지적정성: 농촌마을 또는 농촌마을보호지구(이하 '농촌마을')의 정주성 보호를 위한 보호요소별로 특화지구와의 적절한 근접관계를 파악하여, 적절한 입지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를 정하는 것을 의미

(1) 시·군 전체 또는 지정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아래 표에 따라 각 보호요소별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점수화한 후 합산점수를 구하여 등급화한다.

\* ① 주거지: 건축물대장 상 주택의 외곽경계선 ② 농지:농업진흥구역과 경지정리 전·답(토지피복 또는 팜맵에 따름)의 경계선, ③ 도로: 지방도 이상 도로 경계선 ④ 하천: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과 「소하천법」의 소하천구역 경계

<입지적정성 검토기준>

보호 요소	세부 요소	점수				비고	
		0점	1점	2점	3점		
주거지	건축물대장상 주택	0 ~ 50m	50 ~ 350m	350 ~ 500m	500m ~		
농지	①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	0 ~ 100m	100 ~ 200m	200m ~	①과②동시 고려	
	② 경지정리도 (토지피복도 상)	경지정리 전·답					
도로	① 지방도 이상	0 ~ 30m	30 ~ 100m	100 ~ 200m	200m ~	②는 필요시 고려 가능	
	② 리도	-	0 ~ 100m				
하천	① 하천구역	하천구역	0 ~ 200m	200 ~ 500m	500m ~	①과②동시 고려	
	② 소하천구역	소하천구역	0 ~ 100m	100 ~ 350m	350m ~		
합산점수		0점	1 ~ 4점	1 ~ 4점	1 ~ 4점		
점수구간		0	1 ~ 2	3 ~ 4	5 ~ 7	8 ~ 9	10 ~ 12
등급		0	1	2	3	4	5
입지판단 유형		입지배제		입지조정	입지관리	입지허용 가능	

※ 예) 주거지는 건축물대장 상 주택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0점은 0~50m 구간, 1점은 50~350m 구간, 2점은 350~500m 구간, 3점은 500m 이상으로 한다

(2) 보호요소별 합산점수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입지배제, 입지조정, 입지관리, 입지허용 가능으로 분류하고, 관련법과 조례로 정하는 법적 불허지역은 추가로 제외하고 검토한다.

등급	입지판단 유형	입지적정성 결정
0	입지배제	정주성 보호가 우선하는 지역으로 관리
1		
2	입지조정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가능여부를 결정
3	입지관리	지구 지정수요와 주민 및 토지소유주와의 협의 등을 고려하고, 충분한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 토지이용의 입지를 허용
4	입지허용 가능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등을 지정하기 위한 개발여건을 만족하는 경우 관련시설의 토지이용을 허용
5		

(3) 지정가능지역을 검토할 때에는 입지적정성 결정 결과, 농촌마을과의 거리, 개발가능성, 진입로 개설 여건, 경작 활동 피해 여부, 주변 문화·관광·공공시설 등과의 이격 정도,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등과 아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 ① 농촌 주민들이 생활활동 및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 토지를 이용하는 방식을 고려
- ② 규모는 농촌마을로부터 해당 시설의 이전·재배치 수요 등에 따른 이전시설의 규모와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정하고, 지구 경계에 최소 완충영역 설정가능

(4) (1)에 따른 검토에서 해당 지구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지가 부족한 경우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요소, 거리구간, 등급 점수, 가중치 적용, 입지판단 유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 3.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지정 가능지역

(1)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의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자원을 발굴하고 후보군을 정한다.

(2)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지정 가능지역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 ① 후보자원이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 가능지역 또는 농촌마을 주변의 농지, 산지 등에 해당하여 관련 토지이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농촌다움 회복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② 농촌다움이 잘 보전되어 있거나 다랭이논 등 농업경관의 지역성을 보여주는 경우
- ③ 시·군 경관계획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 ④ 주민 및 토지소유주가 경관협정 등을 체결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등

### 4. 주의 사항

(1)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의 입지적정성 검토는 농촌특화지구의 필요성, 지역여건, 시군의 역량,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적정한 방법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에서 제시한 방법을 참고하여 시·군의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지정가능지역 검토시 자료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개자료를 먼저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로 구축하여 활용한다.